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0. 11. 25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 12. 1

다. 상정일자 : 제10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7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시 상수도 생산에는 한계의 어려움이 있으나 낮은 수도요금체제로 인한 물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 요금과 공과금의 현실화 추진 및 수돗물 다량수요사업자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방법을 협약에 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수돗물 다량수요 사업자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방법을 변경함.
- 상수도 요금(25%) 및 구경별 정액요금(20%)인상함.
- 제수수료를 현실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생산에는 한계가 있으나, 생산비 보다 낮은 수도요금 체계로, 물낭비와 함께 누적 손실이 커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돗물 다량사업자에 징수하던 시설부담금을,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파악됨.

한편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업종별 상수도 요금은 현행보다 25%를 인상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83~84%, 상수도 설계, 각종 검사 및 시험등 수수료는 15%~34%가 인상됨.

금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주민의 물낭비 예방과, 상수도 사업시 차입한 차입금 상환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겠으나, 주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상수도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등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참고로 우리나라 물절약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0%수준에 불과하고 연간 수돗물 생산량의 14.9%가 누수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수준인 10%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반대토론 : 이강준 의원)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상수도 생산에는 한계의 어려움이있으나 낮은 수도요금 체제로 물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생산단가와 형편을 맞추고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이나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상수도 요금 25%인상은 서민가게에 부담을 주고 아울러 수돗물 상승으로 다른 물가의 상승도 예상되므로 본 조례중 별표 1의 업종별 인상표상의 25%요금 인상을 누수율 15%를 감한 22%선에서 인상후 추후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에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를 수정코자 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별표 1)

업종별요율표

(단위 : 톤, 원)

업종별	단 계 별		
	사 용 량	제 출 안 (25%인상시)	변 경 안 (22%인상시)
가 정 용	1 ~ 10	262	256
	11 ~ 20	375	366
	21 ~ 30	525	512
	31 ~ 40	682	666
	41 ~ 50	825	805
	51 ~	1,005	981
업 무 용	1 ~ 20	540	527
	21 ~ 50	607	593
	51 ~ 100	675	659
	101 ~ 300	750	732
	301 ~	847	827
영 업 용	1 ~ 30	570	556
	31 ~ 50	720	703
	51 ~ 100	975	952
	101 ~	1,245	1,215
욕 탕 1 종	1 ~ 200	495	483
	201 ~ 300	622	608
	301 ~ 500	720	703
	501 ~	892	871
욕 탕 2 종	1 ~ 200	660	644
	201 ~ 500	1,072	1,047
	501 ~ 1000	1,282	1,252
	1001 ~	1455	1,420